

第 59 回

서울特別市 鍾路區議會 本會議 會議錄

第 2 號

서울特別市鍾路區議會事務局

日時: 1996 年 5 月 29 日 (水) 11時 03分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鍾路區住民登錄事務의洞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鍾路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3. 環境汚染防止를 위한 道路交通法 改正建議 要求(案)

附議된 案件

1. 서울特別市鍾路區住民登錄事務의洞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1面
2. 서울特別市鍾路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1面
3. 環境汚染防止를 위한 道路交通法 改正建議 要求(案)(康來奎議員外 4人 發議) 4面

(11時 03分 開議)

○議長 金憲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21명 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開議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받고 안건별로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鍾路區住民登錄事務의洞委任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2. 서울特別市鍾路區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鍾路區廳長 提出)

(11時 05分)

○議長 金憲中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玄壽漢 市民行政委員長!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行政委員長 玄壽漢 시민행정위원회 위원장 현수한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중 의장 및 홍승태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요즈음 이상 기온으로 인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 구청 관계관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었으나, 구청을 내방한 민원인에게 구청장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열람의 범위 및 수수료 징수에 대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바람직한 안건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구세감면조례 중 임대주택 감면규정의 자구표현을 구체화하고, 감면을 적용받는 규정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며, 기타 임대주택 사업의 주택건설 촉진과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審 査 報 告 書

1996. 5. 28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5월 17일 .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6년 5월 20일

다. 상정일자 : 제5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1996년 5월 27일)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총무국장 오병한)

가. 제안이유

○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구청을 내방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구청장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업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으나 구청장도 동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2조제4호)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전문위원 장소수)

가. 개정 이유

○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발급 업무를 현재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민원 온라인 제도 시행 등에 따라 구청 시민봉사실에서도 (구청장 명의) 발급할 수 있도록 위임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개정 골자

○ 신청인이 구청장에게 직접 신청하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을 동장위임 제외 대상으로 신설코자 함

다. 관련 법규

〈주민등록법 제2조〉 - 사무의 관장

①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구청장이 관장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그의 권한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제18조〉 -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①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첨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주민등록 업무개선헌정 행정 13210-278 ('96. 2. 24)〉

○ 읍·면·동 처리→시·군·구 처리 가능

라. 검토 의견

○ 개정안은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및 열람 업무를 동장이 처리하던 것을 구청장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편의를 증대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은 위임 사항을 위임자와 수임자가 동시 향유하는 입법상 모순점은 있으나 주민 편의 증진의 측면을 계량해 볼 때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박문배위원, 홍기서위원, 오금남위원, 정태순위원, 정창희위원, 안철주위원, 홍승태위원)

○ 주민등록사무 중 등본의 열람 및 교부를 동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다시 구청장도 병행할 시 예산, 장비, 인력 등 준비 여부는?

○ 타기관에서 발급시 수수료는 거주동과 같이 받는지 여부는?

○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교부시 구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까?

○동에 거주하는 주민이 동에서 등본 교부시와

구에서 교부할시 수수료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 21개동 주민이 구청에서 등·초본 발급시 21개 동장 명의로 발급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용의는?
- 각 동별 등·초본 발급 현황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 주민등록법 제18조의2에 의거 구청장 명의로도 발급할 수 있는데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 동별로 발급할 수 있는 개정(안)이 상정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지?
(답변자 총무국장 오병한, 총무과장 윤수현)
- 주민이 구청 방문시 구청에서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동사무소와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 가능합니다.
- 구청에서 발급시 1·2가동사무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은 동과 같습니다.
-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예산 및 인력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고, 내무부와 협의하여 시행하겠습니다.
- 현재 업무발당이 많은 세종로동, 1·2가동, 3·4가동 등은 업무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법 제18조의2의 해석은 자료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법규해석의 차이라고 봅니다.
- 내무부와 협의하여 시행하겠습니다.

5. 討論 要旨 없음

6. 審査結果 원안 가결

7. 少數意見 要旨 없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없음

(參 照)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審 査 報 告 書

1996. 5. 28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5월 17일

·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1996년 5월 20일

다. 상정일자 : 제5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정위원회(1996년 5월 27일)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재무과장 사공 곤)

가. 제안이유

- 현행 구세감면조례 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임대차주택에 대한 감면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임대주택사업의 주택건설 촉진과 서민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골자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인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내용 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음
- 제18조에 동일한 과세에 대한 지방세 감면시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중복감면을 배제하였음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전문위원 장소수)

가. 개정 이유

- '95. 12. 6일자 신설된 지방세법 제294조의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는 규정을 조례에 신설하고,
- 현행 구세감면조례 중 제11조의 임대주택 감면조항의 감면대상 규정의 어구 표현을 구체화함

나. 개정 골자

-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 적용조항 신설
-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내용 중 개괄적 규정 어구 표현을 구체화 함
 - 제11조제1항 : 부대 복리시설→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제11조제2항 :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

다.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294조〉 중복 감면의 배제

-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내무부 세제 13400-126('96. 3. 21)〉

-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안) 통보

라. 검토의견

- '95. 12. 6자 개정된 지방세법 규정을 조례에 신설코자 하는 안과
- 현행 임대주택 감면규정의 자구 표현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어 해석상의 오류를 초래할 소지가 우려되어 이를 개선키 위한 자구수정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홍기서위원)

- 우리구 관내 임대주택 감면적용 대상 세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자 부과 1과장 강성철)

- 구 관내 감면대상 임대주택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5. 討論 要旨 없음

6. 審査結果 원안 가결

7. 少數意見 要旨 없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없음

○議長 金憲中 玄壽漢 市民行政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는 종로구의회의회의규칙 제52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環境汚染防止를 위한 道路交通法 改正建議要求(案)(康來奎議員 外 4人 發議)

(11時 10分)

○議長 金憲中 의사일정 제3항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건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李炯述 都市建設委員長! 심사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炯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형술입니다.

존경하는 김헌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의원들의 가정에도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제59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건의 요구(안)을 처리하였습니다.

본 요구(안)은 현행 도로교통법상의 규정 미비로 차량의 장기 주·정차시에 엔진 공회전에 관한 제

한 규정이 없어 매연을 발생시키고, 연료를 낭비하는 등 국가적 손실이 막대한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조속히 법 개정을 실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안전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계절의 변화 및 엔진의 점화기능이 여러 종류이므로 주정차시간을 2분에서 3분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전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건의요구(안)

結 果 報 告 書

1996. 5. 28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도 시 건 설 위 원 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1996년 5월 17일
강래규의원 외 4인

나. 회부일자 1996년 5월 20일

다. 상정일자 제59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6년 5월 27일)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강래규 의원)

가. 개정이유

-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이 1996년 1월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5%가 경제발전보다 환경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보았고, 국민의 82%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통을 분담하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만큼 환경문제가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인 이때 우리는 공해를 줄이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러한 국민적 욕구에 부응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차량이 장시간

주·정차시 엔진 공회전에 관한 제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대부분의 차량 운전자들이 습관적으로 또는 무의식 속에서 엔진을 가동한 채 방치하고 있어 매연을 발생시키고 연료를 낭비하는 등 국가적 손실이 막대한 실정입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등 환경을 우선 생각하는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일정시간(2~3분)이상 주·정차시는 반드시 엔진 가동을 멈추도록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관계기관에서는 조속한 법 개정을 하여 시행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관계법 개정 건의를 요구합니다.

나. 주요골자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정차 및 주차 방법 등)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 및 정차를 할 때에는 주·정차시간이 2분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엔진 가동을 정지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3. 質疑 및 答辯의 要旨

(질의자 나재암위원, 이병문위원, 선상선위원)

- 매연 오염방지를 위하여 엔진가동 정지를 2~3분 실시하면 감소 예상은?
- 종로구 관내 매연단속 운영실시 내용은?
- 종로구 중심지에 환경오염 표지판을 만들어 시행할 용의는?
- 대형차량에 대한 매연단속 현황은?
-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주·정차 시간을 2분에서 3분으로 하면 좋겠는데 의견은?
- (답변자 강래규 위원, 환경과장 심윤보)
- 공해의 배출가스 77% 가운데 10% 감소요인이 예상됩니다.
- 현재 무악재 주변은 비디오로 실시하고 있으며 가솔린 단속은 경운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상부에 건의하여 많은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에서 5곳을 지정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

로 6만 6천대의 비디오 촬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건의(안)이 통과되면 중앙부처에서 충분한 검토가 예상되므로 의원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4. 討論 要旨 나재암위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건의(안)의 내용 중 2분을 3분으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함

5. 審査結果 수정 가결

- 관계법령 개정건의(안) 내용 중 2분을 3분으로 수정 동의함

6. 少數意見 要旨 없음

7. 其他 必要한 事項 없음

○議長 金憲中 李炯述 都市建設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토론이 없으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건의 요구(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름에 여러 가지로 업무도 바쁘시고 가정에서도 바쁘신데 매일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9회 중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閉會를 선포합니다.

(11時14分 散會)

○出席委員 20人

金憲中	玄壽漢	李炯述	安哲柱	李炳文
吳錦南	洪承台	沈載得	鄭泰淳	丁昌熙
朴文培	洪起瑞	羅在岩	玄孝善	康來奎
金以煥	金正大	宣相善	朴鍾植	千相旭

○出席 關係公務員

副 區 廳 長	權 哲
總 務 局 長	吳 炳 漢
都 市 整 備 局 長	趙 學 來
建 設 局 長	吳 鍾 錫